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1. 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표

(단위 : 원)

톤급별 거리대별	2.5톤 미만	2.5톤 이상 - 6.5톤 미만	6.5톤 이상
10 Km 까지	51,600	64,700	102,500
15 Km 까지	60,000	75,500	118,700
20 Km 까지	68,300	86,300	134,800
25 Km 까지	76,700	97,100	151,100
30 Km 까지	85,100	107,900	167,200
35 Km 까지	93,500	118,700	183,400
40 Km 까지	101,900	129,500	199,600
45 Km 까지	110,300	140,300	215,800
50 Km 까지	118,700	151,100	232,000
55 Km 까지	127,100	161,900	248,200
60 Km 까지	135,500	172,700	264,300
65 Km 까지	143,900	183,400	280,600
70 Km 까지	152,300	194,200	296,700
75 Km 까지	160,700	205,000	312,900
80 Km 까지	169,100	215,800	329,100
85 Km 까지	177,500	226,600	345,300
90 Km 까지	185,900	237,400	361,400
95 Km 까지	194,300	248,200	377,700
100 Km 까지	202,700	259,000	393,800
100 Km 초과시 매 10 Km마다 가산	16,800	21,600	32,400

2. 적용기준

가. 이 운임·요금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운임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운임·요금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가능한 경우의 운임·요금이며 구난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난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예: 크레인 사용시 고시된 크레인 사용료 적용등)

다.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에 발생하는 단수는 100원 단위로 하며, 10원단위에서 4사5입에 의하여 절상절하한다.

라. 운임은 실차거리(편도)에 의하여 경로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단거리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마.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는 기본운임·요금의 30%를 가산한다.

- 1)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 2) 야간 (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 3)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 4)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 5) 다만,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할증 적용

바. 다음 비용은 실비로 받는다.

- 1) 자동차 도선료(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 2) 유료도로 통행료
- 3)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사. 계산순서

- 1)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 2) 운임의 단수처리
- 3)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할증료, 구난료등)

아. 대기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때에는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고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도착후 구난작업시작전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견인차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이상
대기료	8,200	9,200	12,800

자. 구난작업료(시간당)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구난작업료를 청구할수 있다.

(단위 : 원)

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이상
구난작업료	31,100	38,200	61,000

차. 보관료

피견인 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초과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보관료 총금액이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 : 원)

톤 급 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 이상
보 관 료	19,000	20,800	22,900

카. 기 타

- 1) 특수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역 등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할증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 2) 항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이상의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 3) 이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타. 신고운임·요금적용시기

이 운임·요금은 2012. 1. 2. 00:00부터 적용한다.